개호 보험

1. 개호 보험이란

개호 보험은 개호의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제도. 40세 이상인 사람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개호 보험의 대상자

- ●제1호 피보험자 65세 이상인 사람
- ●제2호 피보험자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되 어 있는 사람

3. 개호 보험료

- ●65세 이상인 사람(제1호 피보험자) 연금이 연액 18만 엔 이상인 분은 원칙적으로 연금에서 공제됩니다(특별 징수). 그 이외의 사람은 납부서나 자동 이체로 납부합니다(보통 징수).
-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제2호 피보험자) 보험료는 가입되어 있는 의료 보험과 개호 보험을 합쳐서 납부

4. 피보험자증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전원에게 피보험자증이 교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은 요개호 인정의 인정자에게 교부. 피보험자증은 요개호 인정의 신청, 개호 서비스 계획의 작성이나 개호 서비스 이용 시에 필요.

5. 개호 서비스・개호 예방 서비스

일상생활에서 개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이용 순서는 장수지원과로 문의할 것.

- ●재택 서비스(개호 서비스・개호 예방 서비스) 방문 개호, 방문 재활, 방문 입욕 개호 등
- ●시설 서비스(개호 서비스) 개호 노인 복지 시설 등
- ●지역 밀착형(개호 예방) 서비스

정기 순회 • 수시 대응형 방문 개호 간호 등

6. 개호 서비스의 이용료

이용한 서비스 비용의 10%가 이용자 부담이 된다.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0% 부담 외에 거주비·식비 등이 든다. 또한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는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20% 또는 30%.

※보험료의 경감, 고액 개호(예방) 서비스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장수지원 과에 문의할 것